

『인권연구』 7(1): 193-222.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7(1): 193-222.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4.7.1.193>

[일반논문]

‘이상동기범죄’는 올바른가?*

윤 은 호**

한글초록

본 연구는 경찰학계에서 ‘문지마범죄’를 대체할 목적으로 제시한 대체 단어인 ‘이상동기범죄’가 해당 범죄유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단어인지 검토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명랑·건전으로 대표되는 오래된 권위주의·모더니티 사회질서에 기반해 ‘비정상’을 처벌하고 정상으로 ‘교화’하기 위한 법 질서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상’이라는 규정이 임의적으로 ‘비정상적’인 존재에게 쉽게 적용되면, 사회적 약자는 차별대상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만들 뿐 아니라 권위주의에 기반한 각종 폭력을 불러일으킨다.

‘이상심리’를 이유로 범죄를 해당 개인의 감성 상태 문제로 환원하여 ‘정신질환자’를 감시하거나 강제입원·자의입원에 넘기도록 한 최근의 정부 정책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법에 어긋난다.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따르면, 한 개인의 이상정념의 신체화를 막지 못하는 한국사회 및 지역사회의 문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상동기범죄’가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막는 반면, 이들의 범죄 행위를 일으키는 사회적 환경을 살펴보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본 용어는 다학제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무작위범죄’ 등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주제어: 이상동기범죄, 문지마범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자폐권리운동, 사회진화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3A2099593)

** 한양대학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전임연구원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이상’과 ‘정상’
- III. 국제법 관점에서의 ‘이상동기’
- IV. 초점을 ‘이상동기’에서 사회로
- V. 나가며

I. 들어가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력을 저질러 살인까지 이르는 범죄를 의미하는 단어로 그동안 묻지마 범죄(문혜민·조은경, 2022)가 사용됐다(국무조정실, 2023). 그런데 최근 한국어 어종의 말글살이에 깊게 자리 잡은 ‘묻지마 범죄’ 사용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민주언론시민연합, 2023).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가해자의 범죄동기 의식이 부재하다고 짚게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취지다. 이미 학계에서도 한국형 분노범죄(이은영·최순실, 2019)나 증오범죄(조계원, 2017) 등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그 대안어로 ‘이상동기 범죄’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선영(2012)에 의해 처음 명명된(나예지 외, 2023) ‘이상동기범죄’는 ‘사회적 분노와 불만의 표출 과정에서(윤상현 외, 2023: 91) 불명확한 범행동기를 가지고(고선영, 2012: 6) 비면식 관계의(안상원, 2020) 무고한 대상을 향하여(윤상현 외, 2023: 91) 저질러지는 범죄로서, 한국 경찰청은 2022년 1월 범죄의 개념정립을 위해 ‘이상동기 범죄’를 대안명칭으로 지정하고, 공식 통계범주에 포함하였다(박수자 기자, 2022).

그러나 ‘이상동기범죄’가 오랫동안 학계에서 사용되어 그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용어의 적절성에 재고가 필요하다. 학계 내에서도 개념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윤상현 외, 2023: 84), 비

슷한 범죄분류인 혐오범죄와의 관계조차 명확하지 않다(홍성수, 2024).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상동기범죄’가 심리사회장애인(정신장애인)¹⁾에 의해서 주로 유발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데 있다.

기존 연구들은 정신질환이 없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비장애인도 사회에 대한 분노 등의 정동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안상원, 2020: 195; Reale et al., 2021). 정신질환 이환 여부가 범죄여부와 유의한 관계를 구성하지도 않는다(조운오, 2020). 그런데 ‘이상동기범죄’ 개념은 묻지마 범죄와 달리 한국어 어중에게 ‘*이상동기-자’라는 개념을 유발하게 된다.

2022년 돌려차기 강간사건, 2023년 신림역 살인사건, 숯컷 폭행 사건 등 신규범죄가 이어질 때마다 경찰청과 언론은 이들을 ‘이상동기범죄자’로서 호명(interpellation)했으며, 보도를 접한 한국어 어중들은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분노를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혐오는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는 집단인 *이상동기-자, 즉 정신장애인으로 확산하여 왔다(송혜진·김석선, 2021). 더 나아가 사회소통에 손상이 있고 사회로부터의 좌절과 분노가 많은 자폐인과 지적장애인, 신경다양인을 포함한 정신적 장애인들도 정신질환 동반과 관계없이 *이상동기-자로 낙인화되어(최명민, 2021)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한국어 어중의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2006년 국제인권법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인준을 계기로 장애에 대한 국내 혐오를 통제할 의무를 안게 되었다. 따라서 새 낱말을 만들 때 한국어 어중의 장애혐오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묻지마범죄’ 개념조차 정신장애인 등의 낙인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최명민, 2021), ‘이상동기 범죄’는 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전연구의 절대다수

1)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을 등록 정신장애인과 미등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가 범죄학적 관점에서 해당 개념을 긍정적으로 살피고 있어, 해당 단어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요구된다²⁾.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본 연구에서는 학제적 접근을 활용하여 ‘이상동기범죄’의 언어적 적절성을 따져보고자 한다. 첫째로 근대 한국사회의 주요 이데올로기로서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권위주의, 우생학에 기반해 ‘이상’한 사람을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사회진화론적 관점이 적절한지 되짚어본다. 둘째로, ‘이상동기’ 용어의 적절성을 장애의 인권적 모델,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적 관점에서 비평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 특히 자폐연구적 관점에서 국내 경찰, 교정과 사법행정이 ‘이상동기범죄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범죄자 중심의 관점은 아닌지 성찰한다.

II. ‘이상’과 ‘정상’

대한민국은 광복 이전부터 권위주의적 통치를 체득한 슬픈 역사가 있다. 을사늑약 이후 한국 국민은 헌병 등의 일본제국 권력에 의해 생활을 통제당했다. 이후 1912년 <경찰범 처벌규칙>, 1925년 <치안유지법> 등에 의해 정치권, 투표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박탈당하였다(유지아, 2017). 당시 일본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등으로 민주주의 절차가 확대되었으나, 이 또한 재조일본인에 한정된 이야기였다(이형식, 2014).

해방 후 민주정이 건설되었으나 이후 한국 사회는 6·25 전쟁, 이승만 독재선거, 5·16 쿠데타, 유신헌법, 12·12 쿠데타 등을 거둬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가장한 권위주의 독재 국가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저항은 탄압되고, 민의는 선거조작이나 대의원제 등의 꼼

2) 물론 ‘이상동기범죄자’의 범죄에는 용납 없이 마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쉽게 안전사회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또한 요구되고 있다.

수를 통해 왜곡되었다. 심지어 6월 민주항쟁 이후에도 보수정부는 미디어에 대한 검열이나 통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자유를 지속해서 훼손하고자 획책하였다(김철수, 1991; 김옥, 2001).

이러한 통제와 감시가 극대화되었던 것이 제3공화국부터 제5공화국에 이르는 군사통치시대다. 5·16 군사쿠데타 직후부터 군사정권은 경제 발전을 위해 국민을 조직하고, 농업·산업 등의 생산 노동에 국민을 투입하였다(추지현, 2018: 205).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농민들을 조직하고 동원함으로써 농촌을 ‘감시와 규율, 생산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원, 2006). 한편 노동을 통한 경제 발전이 중요해지면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있었음에도 경제 발전을 이유로 노동자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제도화되었다(홍석률, 2015). 박정희 군사정권은 이러한 사회적 착취를 ‘경제발전’을 통해 국민이 누리게 될 ‘잘 살’기, 즉 웰빙에 대한 약속으로 치환했다. 전두환 시대에는 사회·정화와 근면과 정신무장을 통한 시민의 ‘선진화’로 ‘명랑사회’가 이뤄질 것이 약속되었다(노봉희, 1981).

문제는 이러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해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였다. 이때 근거이론으로 작용했던 것이 우생학이었다. 1920년대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 우생학을 배운 사람들이 국내에 돌아와 1933년 조선우생학회를 설립했다. 이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정당치 않는 자’들을 비생산적 인간 부류로 호칭하고, 이들을 결혼으로부터 배제하는 등으로 ‘도태’해(신영전, 2006: 150) ‘조선의 민족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은정, 2022: 83-85). 독립 이후에도 이들은 ‘한국민족우생협회’를 재건해 활동했으며 초기 한국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신영전, 2006: 152).

이러한 사회진화론적 호명은 군사독재시대에도 계속되었다. 5·16 군사쿠데타 직후 쿠데타 집단들은 ‘무능한 이승만 정권’이 만들어 낸 ‘사회악’을 청산하기 위해 정치깡패, ‘용공분자’, 특별히 ‘우범청소년’ 등을 배제의 대상으로 지명했다. 이후에도 박정희 정부는 주기적으로, 또한 유신 이후에는 더욱 자주 ‘사회악’ 척결을 위한 단속 및 처

벌을 시행하였다(추지현, 2018: 206- 207).

이처럼 권위주의 통치는 사회로부터 ‘이상’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뽑아내 처벌했으며, 이러한 처벌과 격리는 자연스럽게 처벌되지 않은 ‘정상’ 시민에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어 ‘순응’ 하도록 하는 모더니티, 계몽주의적 통치체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푸코, 2016).

대한민국 정부는 해방 이후에도 한센병자들의 수용소인 소록도나 선감학원 등 시설을 그대로 운영했고, 민주주의 회복 운동을 벌인 사람들을 1990년대 초까지 감시하고 그들의 세력 확산을 막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비장애인들을 잡아가 강제로 임무를 부여하고, 비인간적인 훈련을 강행하거나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이러한 사례로는 실미도 특수부대(손원선, 2011), 북파공작원부대(김태열 외, 2016), 서산개척단, 삼청교육대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이나 ‘부랑자’는 권리를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재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비인간적 감금시설에 구속당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가장 악질적인 사례로 지금까지 일부나마 진상이 드러난 형제복지원(1960-1992)을 들 수 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자와 장애인, 고아를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을 영위하던 민간인까지 임의 납치하였다. 복지원은 자활갱생을 통한 ‘정상인으로서의 사회복귀’를 표방했으나(곽귀병, 2016: 203) 실제로는 시설 밖에서 원생을 영구적으로 격리하며, 강제노동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원장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원생들은 새벽부터 자정까지 강제노동 및 고문에 시달렸다. 매일 관리자의 집단구타와 기합이 이어져, ‘덜 맞고 덜 기합받는 것’만이 매일의 목표가 되었다(박해남, 2019: 261). 이 과정에서 강제구타와 노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 수는 513명이다(곽귀병, 2016: 193). 비장애인으로 견디기 힘든 시설 내에서 장애인생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물화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장애인시설의 운영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이 중 1959년 설립된 대구시립 희망원은 1980년대 가톨릭 대구대학교로 이관된 이후에도 과밀수용, 금품갈취, 저임금 강제노동 등이 지속되었다. 시설 직원은 수용된 장애인에게 폭언, 폭행, 학대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규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별도 공간에서 처벌을 자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조사 결과 장애인이 타 시설에 비해 높은 비율로 사망했으며, 이 중 29명은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한다³⁾.

이러한 사례들만 살펴봐도, 이상한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그들에게 비인권적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정부로부터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았던 한국 사회의 오래된 행태는 ‘이상한’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우생학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 및 질서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금기시되고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부터 형성된 폭주족이나 최근 급증한 ‘자동차 동호회’의 행태와 관련해 이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은 법률 위반으로 이들을 단속, 처벌해 ‘뿌리’를 뽑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 또한 이들을 ‘범죄자’로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다. 반면 라이더들의 발언은 언론상에서 표출되지 않는데, 이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특정인의 인권을 말소하는 객체화(Objectification) 현상으로 볼 수 있다(Papadaki, 2019). 이와 관련해 국내 청소년 연구자들은 라이더 활동이 몰입과 즐거움, 탈출 등 긍정적 심리요인을 가져다주는 것에 주목하고, 대안 프로그램 제시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나(유태균, 2003; 신현균·이현준, 2004) 이에 대한 화답은 거의 없었다. 결국 2023년 10월 전라남도가 아우토파스를 예비타당성조사에 붙이기 전까지 일반 시민이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는 권리의 행사 방식에 대한 대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위주의적 질서가 깊이 자리잡으면서 한국사회는 군사정권 종식

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2016. 11. 14. 일자 16적권00017 00·16진정0246200(병합) 결정

이후 30년 넘게 흘렀음에도 아직까지도 고맥락적 문화(high-contextual culture)의 영향 또한 받아 준거집단 밖의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회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집단 소속감을 중심으로 구성된 권위주의적 사회질서는 주류 사회집단 안에 소속된 사람(insider)들의 불안을 줄여주는 대신, 규율 위반에 대한 두려움을 증대해(Corey, 2009) 사회 서사에 들어맞지 않는 사회구성원을 낙인화하는 것을 정당화한다(DeLuca et al., 2020). 실제 일본에서 이뤄진 연구에 따르면 권위주의적 회사문화는 회사원들의 감정 소모를 촉진하는 반면 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ing et al., 2021).

특히 권위주의적 사고가 체화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커진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권위주의적 양육을 받은 청소년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장애 가능성이 더 높을 뿐 아니라(Uji et al., 2014). 불량배가 되거나 학교폭력에 가담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nafo, 2003; Georgiou, 2016). 또한 권위주의가 체화된 학생들은 통제 능력이자 감각인 통제소재(Locus of control)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게 되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 또한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학교폭력을 저지르게 된다(Georgiou, 2016).

권위주의 양육을 받은 사람은 전환기 이후 보상심리로 인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소유·통제하려는 욕구를 가지는데, 그 주요 사례가 데이트폭력이다(이은혜 외, 2009: 386). 국내에서의 이성관계 프로파일링 조사 결과 ‘폭력관용형’이 응답자(n=2000) 중 각각 10.2%, ‘폭력 지향형’이 8.8%로 나타났는데, 데이트폭력에 대해 관용적일수록 응답자의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고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p < .001$) 나타났다(홍세은·한민경, 2021: 18, 21). 데이트폭력자들은 관계애착과 불안애착이 높으며(양승애, 서경현, 2014), 결혼 이후에도 가정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이은혜 외, 2009). 또한 이 과정에서 가스라이팅이 빈번하게 일어나며(Sweet, 2019), 이 또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및 통제소재를 빼앗아 가해자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폭력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권위주의 사회 내 국민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는 통제를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타인에게 투사하여 이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사회 내 범죄를 늘린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통치, 즉 ‘이상’을 제거하기 위한 정상화의 움직임은 오히려 ‘이상’을 늘림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상’이라는 단어의 적용 기준이 언제라도 비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회적 행동은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수를 언제라도 늘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이상’의 표식(label)은 빈곤층, 고립운둔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빈번히 부과되고, 이로 인해 이상적인 사회통합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미지는 미디어에서도 반복되며 문화적 전유를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폐인을 묘사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2022) 전반에서 우영우가 ‘이상’하다는 사실과 모습이 지속해서 강조됐으며, 드라마 방영 기간 ‘우영우 따라하기’가 반복되며 장애인 희화화 논란이 이어졌다⁴⁾.

그러나 포스트모더니티 시대에 권위주의적 통제는 결국 힘을 잃게 된다. 1990년대 HOT 등 유명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학생들이 대규모로 학교를 빠져나오는 ‘일탈’ 행위가 반복되고, 다수의 사람이 몰려 실신하는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당시 정부는 아이돌 음악 향유를 막기 위해 음악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강경한 대응을 보이기도 하였고, 당시 언론들도 비판보도를 이어갔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K-POP은 한국 문화산업의 주축으로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4) 그러나 자폐스러움은 생물학적 다양성의 유효한 표현이기 때문에(Masataka, 2017) 신경다양성 및 자폐권리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시도들이 무조건적으로 장애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다. 앞으로 설명할 이중공감문제에서와 같이 자폐인의 장애 특성은 자폐스러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자폐인들과 신경규범성(neuronormality)에 의해 고착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자폐인들이 자폐스러운 소통을 배워 자폐스러움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의 장애수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가설에 대한 추가적 고찰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기여하고 있으며(윤영삼·전종우, 2023) 이제는 전세계적인 한국주도 인적교류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한 때는 이상하고, 처벌되고 일소되어야 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이상’한 것을 제외해 ‘정상’으로 돌리려는 권위주의적 관점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사회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한 것을 사회로부터 제거하는 폭력에 기반한 인종주의적 ‘갱생’ 움직임은 국제·국내 인 권법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점에서 ‘이상동기 범죄’의 가해자가 ‘이상’하므로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호명하는 편의주의적 관점은 지금까지의 모더니티, 계몽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극복하지 못한 차별적 용어 선택이 아니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III. 국제법 관점에서의 ‘이상동기’

그러나 ‘이상동기 범죄’ 중 ‘이상동기’는 현행 심리학의 하위 분과인 이상심리학을 참조한 것이어서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정신장애가 약물 등의 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이상동기의 발현에 이르게 된 것이며, 따라서 이들의 이상동기에 대한 죄악시가 마땅하다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는 우리나라의 법과 원칙에 해당하는 국제인 권법 규범을 간과하고 사건을 행정편의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어야 마땅하다. 본 장에서는 장애에 대한 국제법 규범인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하 ICF: WHO, 2016)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UN, 2006)을 통해 장애의 사회적·인권적 모델을 기반으로 ‘이상동기 범죄’라는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23년 8월 17일 개최된 ‘제28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문지마 범죄의 가해자들이 저지르는 흉악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초점을 두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공중협박행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즉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된 개인에 대한 처벌 및 예방 및 치료, 사전 분리에 기반한 대응정책이 발표됐다(국무조정실, 2023). 즉 범행 가능성이 높은, ‘이상심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식별과 치료, 처벌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호학의 하위 분야인 정념기호학은 이러한 해석에 반대한다. 자크 폰타닐은 그레마스의 제안을 받아 정신질환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정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분출되는지를 연구하고, 이를 『정념(의) 기호학』으로 출간하였다(그레마스·폰타뉴, 2014). 정념기호학의 핵심 모델은 표준 정념도식(schéma passionnel canoique)으로, 양태화, 장치화, 정념화(정치화), 정동화, 도덕화의 다섯 단계로 나누는데, 이 중 네 번째 단계인 정동화에서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정념기호학은 정념을 통한 이상행동이 ‘이상심리’ 자체로는 발현되지 않으며, 자신이 대상자에게 품게 된 정념을 확신하고(장치화), 이러한 확신을 신념으로 굳힌 다음(정치화)에야 정동화에 나서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그레마스·폰타뉴, 2014: 362-364). 즉 정념기호학은 정념에 의한 행동이 개인의 정신상태나 질환 때문이 아니라, 개인이 주변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로부터 자신의 정동을 확고히 확인, 확신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이상심리 범죄자’의 범죄동인은 심리적 손상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자가 해당 범죄를 감행하게 할 만한 심리적 정념이 형성되기까지 심리적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념기호학의 인문학적 인사이트는 이와 독립적으로 발전된 대안적 장애인식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기존의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을 의학적 손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장애인의 손상된 상태에 개입(중재)을 통해 재활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하지만 1974년 결성된 반분리신체장애인연맹(UPIAS)은 장애인이 가진 특성이 아니라 ‘격리, 분리, 억압들’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다고 직시한다(UPIAS, 1975). 이러한 관점은 이후 장애의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로 정립되어 장애서사에 대한 대안이 되었다(이지수, 2014).

이후 WHO는 개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질환과 장애에 의해 핸디캡이 발생한다고 보았던 국제손상·장애·핸디캡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DH, WHO, 1980)을 신체장애인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여 2001년에 ICF를 발표하였다(세계보건기구, 2016) 장애의 의학적 모델과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절충한 ICF에서는 건강한 삶의 구성이 몸의 기능이나 활동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부분을 포함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나은우·정한영, 2009). 따라서 기존 장애의 의학적 모델에서는 신체의 손상이 즉각 장애를 불러일으키지만, ICF 모델에서는 개인의 신체적 기능과 구조에 손상이 있더라도 외부 구조, 즉 환경이나 내면적 저해요인이 없이 잘 활동한다면 해당 손상이 ‘이상이나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세계보건기구, 2016: 11). 즉 ICF 체제에서는 신체적 기능의 문제만으로 그 사람이 즉각 장애나 질환을 앓지 않으며, 환경과의 소통 과정에서의 저해 요인들로 인해 수행 능력을 잃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2006년 제정, 2008년 발효된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 및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Lawson & Beckett, 2021). 그러나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2년 가을 제8차 회기부터 이를 장애의 인권적 모델(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로 대체했는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전 의장인 Degener 교수는 해당 모델들의 차이를 여섯 가지로 설명한다. (1)사회적 모델이 사회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인권적 모델은 장애인의 존엄성에 집중한다. (2)사회적 모델이 시민권에 집중하는 데 비해 인권적 모델은 장애인의 모든 권리에 집중한다. (3)손상이 인간의 다양성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4)인권적 모

델은 차별과 정체성의 복합성을 설명할 수 있다. (5)사회적 모델이 추구하는 금지 정책은 다른 인권을 규제할 수 있다. (6)사회적 모델은 빈곤과 장애를 결합하지만, 인권적 모델은 장애인의 빈곤 탈출을 추구한다(Degener, 2016).

2014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가 출판한 『장애인권리협약 훈련 가이드』(UN, 2014)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에 구속된다(bind)’라고 규정하며, 이 모델에 따라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정책을 입안’하지 않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장애주류화를 이뤄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UN, 2014: 11).

한편 법무부가 대책 내에서 입안을 준비하기로 한 사법입원제도는 권리협약 14조(신체의 자유 및 안전) 및 15조(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위배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0월 6일 결정된 대한민국 2·3차 최종전해(CRPD, 2022)에서 위원회는 후견법 및 ‘손상에 근거한 비자의 자유 박탈을 허용하는 정신보건법을 철폐하고’ (32(a)), ‘사회심리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자의적이며 강제적인 처치, 특히 격리를 유도하는 처치에 처해 있지 않은지 보장하는 모니터링 기구’를 설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32(b)), 특히 이들에게 이뤄지고 있는 ‘신체적, 화학적, 도구적 강박과 다른 형태의 처치’ (33)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심리 장애인’의 강제입원 및 처치, 중재가 정당화될 뿐만이 아니라 강화되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지속해서 받게 될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 등의 국제인권법의 국내 효력성에 대해 살펴본다. 국제법의 수용과 관련해 우리 헌법 6조 1항은 ‘헌법에 따라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우리 법은 일원론, 수용이론을 채택하고 있다는 해석이 중론이다(김유향, 2021: 168-170). 또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이른바 관습국제법

이나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조약이나 특히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있다고 하더라도(정인섭, 2016), 국회의 동의를 거친 조약은 법률과 동일 효력을 지닌다는 것이 정론이라 할 수 있다(성재호, 2017).

한편 해당 국제법의 자기집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성재호, 2017),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의 1차 심의결과를 수용해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실제로는 간소화⁵⁾) 하여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부합하게 바꿨다고 보고하였거나, CRPD 2·3차 국가보고서(대한민국 정부, 2019)에서 14조 및 15조에 대해 위원회가 제기한 사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부분 자기집행성이 부정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의 인권적 모델과 관련된 1~5조나 정신장애인의 구금과 관련된 12조 등 핵심 조항들은 대한민국 의회가 이미 승인하였고, 선택의정서나 일부 조항같이 유보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자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 이 조항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반론이 가능하나, 2019년 뚜렛 장애인의 등록거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⁶⁾를 보면 기존의 장애인 분류는 ‘모법의 … 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어느 특정한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 아니라 …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실시하고 있다.

이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기준⁷⁾에 의해 정부로부터 등록이 거

5)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10. 6. 결정 대한민국 2·3차 최종견해(CRPD/C/KOR/2-3), 5(b)항.

6)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부되고 있는 ‘미등록’ 자폐인, ADHD인, 심리사회장애인, 특히 지적 장애인들의 등록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가 있으나⁸⁾, 본 판결 및 국제법의 취지를 결합해 볼 때 이들이 국제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현재의 정책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ICF를 통해 볼 때,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들이 정념을 발휘하도록 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환경, 제도에 대한 검토 없이 정신적 손상에 초점을 두고 이를 제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장애의 의학적 모델에 기반한 판단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2023년 8월 17일 정신장애인의 ‘이상동기성’을 이유로 강제 구금 등 표면적 대책을 제시한 행동(국정조정실, 2023: 2)은 권리협약 8조 1(b), 14조, 15조 등의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다.

IV. 초점을 ‘이상동기’에서 사회로

지난 장에서 인문학, 사회과학 특히 법학적 관점을 결합해 도출한 판단을 바탕으로, 장애의 인권적 관점 및 신경다양성론 관점에서 ‘이상동기 범죄’ 개념의 유효성을 좀 더 짚어보고자 한다.

앞서 살핀 ICF는 장애 상태가 손상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가 이들을 포함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ICF 및 CRPD에 따르면 손상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여 사회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을 가진 그대로 사회에서 동일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통합 이행에는 상당한 장벽이 있다. 장애인의 사회진입을 막는 대표적인 장벽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등 물리적

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 (2023. 3. 21., 일부개정)

8) 가령 2023년 미등록 지적장애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선고가 보도되었는데, 이 판결은 현행 기준인 DSM-5/ICD-11를 배제한 채 CRPD에 어긋나는 ‘지능검사’가 ‘객관적 수단’이라고 주장한다(이대회, 2023).

접근성 문제가 주로 언급되지만, 그보다는 고용이나 활동 참여, 수용, 지원체계(Hall, 2009), 또래관계(Woodgate et al., 2019) 등 심리적 접근성 등이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주변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이나 시선, 태도에 민감해 지는 등의(Fitzgerrald, 2018)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심리적 상처를 더욱 받기 쉬워지며 이러한 정념들은 짜증, 분노, 멜트다운으로 나타난다(Myles & Hubbard, 2005).

안타깝게도 정신적 장애인들에게 ‘공감능력이 없다’(Fletcher-Watson & Bird, 2019), ‘무능력하다’(Freidman, 2019)는 등의 차별적 고정관념이 세계적으로 선형적,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Deal, 2006). 따라서 국제인권법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8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편견, 위협한 관행’과 싸우도록(combat) 당사국이 즉각(immediate)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의 인권적 모델 관점에서, ‘이상동기 범죄’는 ‘이상심리’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장애인들이 사회, 특히 또래와 가족,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입이 없어 부정적 정념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협약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는 먼저 사전에 정신장애인들이 가진 정념이 극대화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이러한 정념의 방출을 부추기는 메커니즘을 제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다하였는지 확인할 책무를 부여받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모델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신경다양성 개념이 있다. 최근 국내 논의가 확산되는 신경다양성 패러다임은 1990년대 중반 자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면서 생겨났다(Botha et al., 2024). 이들은 자폐인 간의 소통이 잘 되는 것을 근거로 자폐특성을 비롯한 여러 ‘정신질환’들이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물적 다양성임을 제시하였다(Barry, 2012). 이후 해당 논의는 자폐 특성이 장애가 되는 이유가 자폐인과 비자폐인의 소통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밀턴의 이중공감문제(Double Empathy Problem) 논제로 확장된다(Milton et al., 2022). 신경다양성과 이중공감문제는 유엔장애인권리

협약과 함께 자폐인을 포함한 신경다양인에게 들어맞는 한국사회 내 소통방식을 제공할 정부의 의무를 상기한다⁹⁾.

헌법 10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함께 행복추구권을 확인하며, 이러한 권리는 정신장애인, 자폐인,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박탈될 수 없다(헌법 11조). 따라서 이들을 ‘이상동기 범죄 예비군’이나 시설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로 여기기에 앞서, 이들에게 분노나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사회적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며, 심리적 평안과 행복을 추구할 다양한 여가, 수단과 비선형적 사교와 연대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지 돌아보고 장애 및 정신보건 정책을 개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따른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또한 추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신적 장애범죄자의 범죄 동기나 행위 등의 판단 방식을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상동기범죄자’들을 경찰·사법 당국이 다뤄 온 방식을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이상동기범죄의 사회적 심각성을 알리게 된 계기 중 하나인 강남역 살인사건은 ‘혐오살인’이라는 충분한 학술적, 사회적 합의가 있으나, 경찰과 사법에서는 정신질환에 의한 ‘무작위 살인’으로 종결한 사건이다¹⁰⁾.

해당 판결문에서는 해당 당사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약을 먹지 않는 등 정신의학에 의한 약물적 처치를 받아 정신

9) 예를 들어 ‘무언어증’으로 표현되는 비발화 선호자에게는 발화를 강제하는 중재 대신, 글과 그림을 통한 대체·보완의사소통(증강대안소통; Augmentative & Alternative Communication) 등의 제공이 더욱 효과적이다. 2022년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내린 대한민국 2·3차 최종권고에서도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미디어, 교육, 사법 분야에서 정신적 장애인에게 AAC 및 쉬이읽기(Easy read) 정보를 제공할 것을 수 차례에 걸쳐 권고하고 있다(12(c); 43(a); 50(b)).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고합673, 2016감고4(병합), 2016전고14(병합) 판결; 이기수, 2017.

질환의 정도가 심하였다는 치료 경력만을 근거로 해당 당사자의 책임능력을 부정하고 감형하였다. 해당 판결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4조 1항 위반 여부는 차치하고, 당시 해당 사건이 여성혐오범죄에 해당된다는 학계적 합의가 있었으나, 경찰은 이를 해당 당사자의 ‘이상심리’로 설명하려는 전략을 취해 논란을 증대시킨 면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범죄사실 및 책임능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해당 범죄자가 여자들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분노스러운 정념을 키워오고 있었다는 동기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단서가 나와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자의 정념이 이 사건의 감행에 큰 역할을 끼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등이 동일 유형의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정념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재가 개발돼 범죄 위험군에게 시행되었다면 해당 처치를 통해 범죄를 사전차단·예방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 결과 이 사건 이후 혐오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최근 주요 사례로 2022년의 돌려차기 후 강간미수 사건¹¹⁾, 2023년 11월 4일 ‘남성연대 회원’ 남성이 ‘숫컷’ 여성노동자를 폭행한 사건 등이 있다.

반면 일본 사법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자’들의 목소리가 객체화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2019년 일어난 교토애니메이션(京都アニメーション) 방화살인사건의 최근 1심 판결문에서¹²⁾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인간적 사고’를 가지고 무차별 범죄를 검토하다 방화사건을 계획, 실행한 점으로 인해 사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정신과나 방문개호로부터 멀어지면서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주변과의 관계가 끊어져 불신감을 형성하게 된 상황 또한 ‘피고에 책임을 지울(歸責) 수 없다’라고 평가해(産経新聞, 2024),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수용하고 있다.

11) 부산고등법원 2023. 6. 12. 선고 2022노497, 2022전노56(병합), 2022보노59(병합) 판결

12) 교토지방법판소 2024. 1. 25. 선고 令和2年(わ)1282 판결

재판 마무리 시기 보도된 기사에서는 궁핍한 환경 속에 있던 용의자가 교애니 작품을 보고 시나리오 작가가 되길 동경했지만, 작품이 선정되지 않으면서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가 잘 서술되어 있다 (jiji.com, 2023). 즉 용의자의 심리를 대중에게 전달해, 이 사건이 일본사회의 문제이기도 함을 드러내고 있다. 상기 두 사건에서 나타나는 사법적 판단 차이는 한국이 사회심리장애범죄자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무엇보다도, 서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상동기 범죄’를 통해 특정 집단을 타겟팅한다면, 정신적 장애인 전반에 대해 사회적,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었던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적 장애인 대상 낙인과 분리가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다. 정신적 장애범죄자의 이상심리에 대한 처치 및 중재에 대한 필요성과 별도로, 당사자연구(Gaillard, 2022) 등의 비약물적 대안이 개발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정신장애인을 항상 약물에 의존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일반인들의 정신상담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내담자들이 이를 포기하여 적절한 중재시기를 놓치게 되는 부작용을 오히려 강화하게 될 것이다.

V. 나가며

본 연구에서는 ‘이상심리 범죄’가 인문학 및 사회과학 관점,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필두로 하는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이상심리 범죄’ 용어는 (1)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어긋나고, (2)‘이상’을 이유로 정신적 장애인을 사회에서 분리하는 비인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3)‘이상심리’의 배경이 되는 사회의 책임을 배제하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일괄적으로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장혜영 전 의원은 당선 전 동생을 탈시설하고 동생과 지역사회에서 살기로 하는 과정을 겪고 나서 만든 노래에서,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고 묻고 나서, ‘역시 할머니가 됐을 네 손을 잡고서 ... 그 가게에 앉아 ... 웃을 거야’라는 소망을 담은 바 있다. 이 질문을 정신적 장애인의 관점에서 “나도 무사히 ‘이상심리 범죄자’가 되지 않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마땅한 이상한 ‘발달장애인’이 되지 않고 친구와 가족과 함께,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로 바꾼다면 한국 사회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최근 일본에서 발각된 자니스 성폭행 사건 및 타카라즈카 극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비장애인 누구라도 조직문화 및 괴롭힘 등의 외인적 요인에 의해 트라우마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정신건강이 나빠지다 결국은 후천적 정신장애를 가지기까지 이를 가능성이 비장애인에게도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하물며 자폐인을 포함한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학교폭력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동반이환 정신장애의 비율이 신경전형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Lai et al., 2019)는 점을 생각할 때,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막는 장벽을 철폐하기보다 의학적 처치, 사회적 격리를 우선시하는 정부정책이 계속된다면 심리사회장애인에 더해 자폐인, 신경다양인, 지적장애인들은 ‘무사히 어르신이 되’기 힘들 것이다.

경찰청이 연구대상 유형 범죄를 표현할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이 표현을 선택, 강요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추적·감시하여 당사자의 ‘사회부적합성’이 발견되는 즉시 격리하고,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들의 괴로움은 무시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반복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상심리범죄’의 대안 용어로서 ‘무작위범죄’를 제안한다. 무작위범죄는 범죄 피해자의 유형에 초점을 맞춰 범죄가 해자나 그의 특성, 또는 질환여부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인권차별적 요소가 없고, ‘묻지마 범죄’와 달리 비슷한 유형의 범죄인 혐오범죄나 데이트범죄와 분별가능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

하나의 단어를 대체하는 단어의 발골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최근 자살을 ‘극단적 선택’으로 바꾸는 것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하

는 한국기자협회 토론회 이후(최승영, 2023) 2024년 5월부터 해당 단어의 국내 언론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었다(언론중재위원회, 2024). 한국어 말글살이에 쉽게 정착한 대안단어의 부적절성마저 지적되는 실정이라면 당연히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직결될 수도 있는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했을 것이다. 본 논고를 통해 ‘문지마 범죄’와 ‘이상심리 범죄’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 경찰행정 및 사법에서 장애포함적 언어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논문접수일: 2024. 05. 15, 논문심사일: 2024. 06. 06, 게재확정일: 2024. 06. 18)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2023. 8. 17, [보도자료]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13년 10월 17일 확인.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4578>
- 고원, 2006. 박정희 정권 시기 농촌 새마을운동과 근대적 국민 만들기, 『경제와 사회』, 69, 178-201.
- 곽귀병, 2019, “총체적 기관 안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미시사회학: 부산 형제복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9(2), 191-233.
- 알지르다스 쥘리앵 그레마스·자크 폰타뉴, 2014[1991], 『정념의 기호학』, 강.
- 김육, 2001, “영화에서의 사전검열금지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 2000헌가9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 부쳐—”, 『민주법학』, 19, 155-174.
- 김은정, 2022[2017],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근현대 한국에서 장애·젠더·성의 재활과 정치』, 후마니타스.
- 김유향, 2021, 『기본강의 헌법』, 제2전면개정판(17), 월비스.
- 김철수, 1991, “방송비평 : 새로운 보도지침 자동조율시대”, 『사회평론』, 91(3), 228-229.
- 김태열·김현수·송재현, 2016, “국가보훈법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특수임무수행자의 의료지원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40(3), 153-168.
- 노봉희, 1981, “술선수범의 결의로 工員의 일 自願”, 『농약과식물보호』, 2(9), 63-64.
- 대한민국 정부, 2019,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보건복지부.
- 문혜민·조은경, 2022, “한국에서 ‘묻지마 범죄’의 개념적 실체에 관한 소고”, 『한국범죄학』, 16(1), 143-165. doi:10.29095/JKCA.16.1.7
- 민주언론시민연합, “또 잘못 짚은 언론들… ‘묻지마 범죄’는 없다”, 『오마이뉴스』, 2023. 8. 9자.
- 박수자, “통계조차 없었던 ‘묻지마 범죄’ → ‘이상동기 범죄’로 부른다”, 『한겨레』, 2022. 1. 9자.

- 박해남, 2019, “한국 발전국가 시기 사회정치와 부랑인의 사회적 배제”, 『민주주의와 인권』, 19(3), 233-272.
- 성재호, 2017,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헌법 제6조 1항 해석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미국헌법연구』, 28(1), 109-145.
- 손원선, 2011, “영화에서 실제 인물이나 사건의 묘사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평석대상판결: 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다3483 손해배상(기) 등 — 영화 ‘실미도’ 사건”, 『안암법학』, 34, 439-476. doi:10.22822/alr..34.201101.439
- 송혜진·김석선, 2021, “신문기사를 통해 본 조현병의 의미연결망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6), 375-384. doi:10.5762/KAIS.2021.22.6.375
- 신영전, 2006, “식민지 조선에서 우생운동의 전개와 성격: 1930년대 『우생(優生)』을 중심으로”, 『醫史學』, 15(2), 133-155.
- 신현균·이학준, 2014, “오토바이 폭주 청소년들의 심리분석 : 여가현상학적 접근”, 『움직임의 철학』, 12(2), 301-314.
- 세계보건기구, 2016,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한글번역본 제2차 개정판)』, 사회보장정보원.
- 안상원, 2020,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6(2), 177-179. doi:10.33563/KSCIA.2020.6.2.10
- 양승애·서경현, 2014, “집착 성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경계선 성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0), 313-336.
- 유지아, 2017, “1910-20년대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제국주의의 변용”, 『한일관계사연구』, 57, 431-467. doi:10.18496/kjhr.2017.08.57.4310
- 유태균, 2003, “청소년 오토바이폭주의 참여 동기”, 『움직임의 철학』, 11(1), 139-148.
- 윤상연·백승경·허태균, 2023, “문지마 범죄의 학문적 재정립 :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화 및 통계적 관리방안”, 『한국범죄학』, 17(3), 83-100. doi:10.29095/JKCA.17.3.4
- 윤영삼·전중우, 2023, “K-POP 정향과 BTS 동일시가 K-POP 만족도와 한국 국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와 영향』, 45(3), 291-303. doi:10.33645/cnc.2023.03.45.03.291
- 이기수, 2017, “‘강남역 살인’ 사건의 여성혐오 논란과 수사상 시사점”, 『치

- 안정책연구』, 31(1), 233-266. doi:10.35147/knpsi.2017.31.1.233
- 이대희, “‘IQ 72’도 지적장애인 인정해 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 연합뉴스, 2023. 11. 18.자
- 이은영·최순실, 2019, “한국형 분노범죄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 59, 29-54. doi:10.35422/cwsk.2019.59.2
- 이은혜·이초롱·현명호, 2009, “데이트 폭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서 용서: 투자모델에 더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385-403.
- 이정현, “‘묻지마 범죄’ 공식용어는 이상동기 범죄…경찰, 대응TF 구성”, 연합뉴스, 2022. 1. 19.자
- 이지수, 2014,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가진 의미와 한계: 장애 개념정의와 정체성의 정치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5, 33-56. doi:10.22779/kadw.2014..25.33
- 이형식, 2014, “1910년대 일본제국의회 중의원과 조선통치” 『史叢』, 82, 213-245. doi:10.16957/sa..82.201405.213
- 정인섭, 2016, “헌법 제6조 1항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 적용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23(1), 49-77.
- 조계원, 2017, “한국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과 규제 방안”, 『법과 사회』, 55, 65-97. doi:10.33446/KJLS.55.3
- 최명민, 2021, “조현병과 사회적 낙인: 그 형성기제와 극복방안”,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9(1), 206-228. doi:10.24301/MHSW.2021.3.49.1.206
- 최승영, 2023. 11. 10. “‘극단적 선택’ 표현, 자살률 감소 효과 없다는게 학계 중론”, 『기자협회보』. 2023. 11. 13 접속.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644>
- 추지현, 2018, “박정희 정권의 ‘사회악’ 호명 — 형사사법의 효율성 확보 전략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17, 201-235. doi:10.37743/SAH.117.6
- 미셸 푸코, 2016[1970],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나남.
- 홍석률, 2015, “동일방직 사건과 1970년대 여성노동자, 그리고 지식”, 『역사비평』, 112, 232-251.
- 홍세은·한민경, 2021,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에 따른 남성의 유형화와 데이트폭력 차이 분석: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형사정책연구』 32(4), 1-32. doi:10.36889/KCR.2021.12.31.4.1

- 産経新聞, 2024. 1. 26. 京都アニメーション放火殺人事件の判決要旨, 『産経新聞』. 2024. 5. 8. 접속.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126-5L3MOPUHL5NYJDKNM2RDNG4G3U/>
- Berry, Kevin, 2012, “Gray Matters: Autism, Impairment, and the End of Binaries” *San Diego Law Review* 49(1), 161-220.
- Botha, Monique, Chapman, Roert, Giwa Onaiwu, Móreнике, Kapp, Steven K., Stannard Ashley, Abs, & Walker, Nick, 2024, “The neurodiversity concept was developed collectively: An overdue correction on the origins of neurodiversity theory”, *Autism* 28(6), 1591-1594. doi:10.1177/13623613241237871
- Chiang, Jack Ting-Ju, Chen, Xiao-Pin, Liu, Haiyang, Akutsu, Satoshi, & Wang, Zheng, 2021, “We have emotions but can’t show them! Authoritarian leadership, emotion suppression climate, and team performance”, *Human Relations* 74(7), 1082-1111. doi:10.1177/0018726720908649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2. 10. 6.,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RPD/C/KOR/CO/2-3)” 2024. 5. 14. 확인.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2fC%2fKOR%2fCO%2f2-3&Lang=en
- Corey, Butler, J., 2009, “Authoritarianism and Fear of Deviance”,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1(1), 49-61.
- Deal, Mark, 2007, “Aversive disablism: subtle prejudice toward disabled people”, *Disability & Society* 22(1), 93-107. doi:10.1080/09687590601056667
- Degener, Theresia, 2016, “Disability in a Human Rights Context”, *Laws* 5(3), 35. doi:10.3390/laws5030035
- DeLuca, Joseph S., Hwang, Junseon, Lauren Stepinski & Philip T. Yanos. 2022, “Understanding explanatory mechanisms for racial and ethnic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stigma: the role of vertical individualism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Journal of Mental Health* 35(1), 39-49. doi:10.1080/09638237.2020.1836556

- Fitzgerrald, Hayley, 2018, “Disability and Barriers to Inclusion”, in Brittain, I, Beacom, A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Paralympic Studies*, Palgrave & Mcmillan, 55-70. doi:10.1057/978-1-137-47901-3_4
- Fletcher-Watson, Sue & Bird, Geoffrey, 2020, “Autism and empathy: What are the real links?” *Autism* 24(1), 3-6. doi:10.1177/1362361319883506
- Freidman, Carli,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Prejudi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57(4), 263-273. doi:10.1352/1934-9556-57.4.263
- Gaillard, Maxence, 2022, “Tōjisha Research and Narrative Medicine: Contribution of a Japanese Experiment in the Investigation of Patients’ Personal Experience”, *The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47(6) 749-760. doi:10.1093/jmp/jhac025
- Georgiou, Stelios N., Myria Ioannou & Panayiotis Stavrinos, 2017, “Parenting styles and bullying at school: The mediating role of locus of 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School & Educational Psychology* 5(4), 226-242, doi:10.1080/21683603.2016.1225237
- Hall, Sarah A., 2009, “The Social 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 Qualitative Meta-Analysis”, *Journal of Ethnographic & Qualitative Research* 3(3), 162-173.
- Jiji.com, 2023. 10. 23., “小説家夢破れ、転じた憎悪「底辺の人生」秋葉原事件に共感—青葉被告公判・京アニ放火殺人”, 2023년 11월 19일 확인. <https://www.jiji.com/jc/article?k=2023102200254>
- Knafo, Ariel, 2003, “Authoritarians, the Next Generation: Values and Bullying Among Adolescent Children of Authoritarian Fathers”,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3(1), 199-204. doi:10.1111/j.1530-2415.2003.00026.x
- Lai, Meng-Chuan, Caroline Kasse, Richard Besney, Sarah Bonato, Laura Hull, William Mandy, Peter Szatmari & Stephanie H Ameis, 2019, “Prevalence of co-occurring mental health diagnoses in the autism popul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lancet*

- psychiatry* 6(10), 819-829. doi:10.1016/S2215-0366(19)30289-5
- Lawson, Anna & Beckett, Angharad E, 2021, “The social and human rights models of disability: towards a complementarity thesi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25(2), 348-379. doi:10.1080/13642987.2020.1783533
- Masataka, Nobuo, 2017, “Implications of the idea of neurodiversity for understanding the origins of developmental disorders”. *Physics of Life Reviews*, 20, 85-108. doi: 10.1016/j.plrev.2016.11.002
- Milton, Damian, Emine Gurbuz & Beatriz López, 2022, “The ‘double empathy problem’: Ten years on”, *Autism* 26(8), 1901-1903. doi:10.1177/13623613221129123
- Myles, Brenda Smith & Hubbard, Anastasia, 2005, “The cycle of tantrums, rage, and meltdowns in children and youth with Asperger syndrome, high-functioning autism, and related disabilities.” *CDROM ISEC 2005 Inclusive and Supportive Education Congress*. Vol. 10. 2023년 11월 17일 접속
- Papadaki, Evangelia Lina, 2024, “Feminist Perspectives on Objectification”, Zalta, Edward N., & Nodelman, Uri, (ed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ummer 2024 Edition), <https://plato.stanford.edu/entries/feminism-objectification/>
- Reale, Kylie S., Beauregard, Eric, Chopin, Julien, & Wells, Nathan, 2021, “Making sense of senseless murders: The who, what, when, and where?”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39(2), 230-244. doi:10.1002/bsl.2513
- Sweet, P. L., 2019, “The sociology of Gaslight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4(5), 851-875. doi:10.1177/0003122419874843
- Uji, Masako, Sakamoto, Ayuko, Adachi, Keiichiro & Kitamura, Toshinori, 2014, “The Impact of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Styles on Children’s Later Mental Health in Japan: Focusing on Parent and Child Gender”,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 293-302. doi:10.1007/s10826-013-9740-3
- United Nations, 200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2024. 5. 14. 확인.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convention-rights-persons-disabilities>
- United Nations, 2014,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raining guide*, (HR/P/PT/2019).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772770>.
- UPIAS, 1975, *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 Policy Statement*, 'The Disability Archive', Centre for Disability Studies, University of Leeds. 2024. 5. 13. 확인. <https://disability-studies.leeds.ac.uk/library/author/upias/>
- Woodgate, Roberta L., Miriam Gonzalez, Lisa Demczuk, Wanda M. Snow, Sarah Barriage & Susan Kirk, 2020, "How do peers promote social inclus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 mixed-methods systematic review",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42(18), 2553-2579, doi:10.1080/09638288.2018.1561955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8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iris.who.int/handle/10665/41003>

<Abstract>

Are ‘Abnormally Motivated Crime’ Appropriate?

Yoon, Wn-Ho*

This study examin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term “abnormally motivated crime” as an alternative to “‘don't ask’ crime”, which was proposed by the policing studies.

In Korea, the old authoritarian and modern social order, represented by cheerfulness and health, still maintains a legal order that punishes ‘abnormalities’ and ‘edifies’ them into normality. In such a social atmosphere, the concept of ‘abnormality’ is arbitrarily and easily applied to ‘abnormal’ beings, which not only makes the socially disadvantaged position themselves as discriminated against, but also provokes various kinds of violence based on authoritarianism.

Recent government policies that reduce criminality to the emotional state of the individual on the grounds of ‘abnormality’, and that have led to the surveillance, forced hospitalisation and self-admission of ‘mentally ill’ people, also viol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clud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the problem of Korean society and communities failing to prevent the physicalisation of an individual's ideals should not be overlooked.

‘Abnormally motivated crime’ is not a proper word because the notion blocks the soci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psychological disabilities, and blinds them from finding out the social environment

* Hanyang univ.

that causes their criminal acts. Therefore, the word may be improper from the interdisciplinary viewpoint, and alternative words like ‘random crime’.

Keywords: Abnormally Motivated Crime, ‘don’t ask’ crime,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utistic rights movement, Social Darwinism